

2022년 지방세법 해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지방세의 난이도는 꽤 어려웠을 걸로 생각된다. 지문의 길이가 대부분 길어졌다. 내용이 어렵지 않더라도 지문이 길어지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진다. 또한 지역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지역적인 주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1. ①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한다.

3. ④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강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④

- 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다.
-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다.
- ③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

5. ①

본인외의 이해관계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③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7. ②

-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의 소재지이다.
- ③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8. ②

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확정전보전압류)에 따라 압류한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9. ④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0. ③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11. ①

②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된다.

③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된다.

④ 변경면허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 해당 면허에 대한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12. ①

②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본다.

③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이 연결법인에 해당된다.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과 건축물 연면적 기준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3. ②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택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연결련은 5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궤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한다)

14.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특별징수의

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6. ①

②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7. ③

레저세는 일정세율로 가감할 수 없다.

18. ④

① 레저세는 일정세율로 가감할 수 없으며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가감할 수 없다.

②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③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19. ①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종전 과점주주였을 때 지분율과의 차이를 간주취득으로 한다.

따라서 60%와 75%의 차이를 간주취득으로 본다.

20.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속버스: 100,000원

(나) 대형전세버스: 70,000원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